

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호	15225
-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2.

발의자 : 서일준 · 임종득 · 박충권

강명구 · 추경호 · 이인선

김장겸 · 김재섭 · 정동만

## 윤상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범죄,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).



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6호의3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죄를 지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	제33조(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.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6의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
6의4. ~ 8. (생 략)	6의4. ~ 8. (현행과 같음)